

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79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6. .

발 의 자 : 이재호 의원 등 9인

☐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2007. 5. 11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제명 “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성남시 결산검사위원
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
- 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”
으로 개정
- 제3조제3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5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”로
개정
- 제9조 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”으로 개정

☐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
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성남시 결산검사위원
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5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</u> 제1조(목적) --<u>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</u> ---- 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~ ② (생 략) ③ -----<u>지방자치법 제56조</u> ----- 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<u>지방자치법시행령</u> -----	<u>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134조제3항 - 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64조 ----- 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「 <u>지방자치법 시행령</u> 」 -----

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79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6. .

발 의 자 : 홍석환 의원 등 9인

☐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2007. 5. 11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2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”로 개정
- 제5조제1항 중 “공무원연금법시행령”을 “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”으로 개정

☐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
성남시조례 제 호

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2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
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공무원연금법시행령”을 “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--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2조의2 ---	제1조(목적)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4조 -----
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--- 공무원연금법시행령 -----	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---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-----

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79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6. .

발 의 자 : 윤창근 의원 등 9인

☐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2007. 5. 11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8조·제39조·제41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4조·제45조·제47조” 로 개정
- 제2조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7조”로 개정
- 제3조 중 “법 제38조 및 제39조, 제41조”를 “법 제44조 및 제45조, 제47조”로 개정
- 제4조 중 “법 제38조”를 “법 제44조”로 개정
- 제6조제1항 중 “법 제125조”를 “법 제134조”로 개정
- 제6조제2항 중 “법 제36조 제1항”을 “법 제41조제1항” 으로 “법 제118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개정

☐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
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8조·제39조·제41조”를
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4조·제45조·제47조”로 한다.
제2조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7조”로 한다.
제3조 중 “법 제38조 및 제39조, 제41조”를 “법 제44조 및 제45조, 제47조”로 한다.
제4조 중 “법 제38조”를 “법 제44조”로 한다.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125조”를 “법 제134조”로 한다.
제6조제2항 중 “법 제36조 제1항”을 “법 제41조제1항”으로 “법 제118조”를
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--- <u>지방자치법</u>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8조·제39조·제41조 -----	제1조(목적)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4조·제45조·제47조 -----
제2조(회의총일수) -- <u>제41조</u> -----	제2조(회의총일수) -- <u>제47조</u> -----
제3조(회기) -- <u>제38조</u> 및 <u>제39조</u> , <u>제41조</u> ---	제3조(회기) -- <u>제44조</u> 및 <u>제45조</u> , <u>제47조</u> ---
제4조(정례회 개최) -- <u>제38조</u> -----	제4조(정례회 개최) -- <u>제44조</u> -----
제6조(정례회 심의)	제6조(정례회 심의)
① -- <u>제125조</u> -----	① -- <u>제134조</u> -----
② -- <u>제36조 제1항</u> --- <u>제118조</u> ----	② -- <u>제41조제1항</u> --- <u>제127조</u> -----

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80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6. .

발 의 자 : 윤창근 의원 등 9인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2007. 5. 11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제명 “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”를
“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
- 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
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”로 개정
- 제2조제3호 중 “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법 제113조 내지
제116조”로 개정
- 제2조제4호 중 “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”를 “법 제117조 내지
제120조”로 개정

□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
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명 “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”를
“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
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”를 “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</u> 제1조(목적) -- <u>지방자치법</u>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7조 ----- 제2조(범위) 1. (생략) 2. (생략) 3. -- <u>제104조 내지 제107조</u> ----- 4. -- <u>제108조 내지 제111조</u> -----	<u>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2조 ----- 제2조(범위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-- <u>제113조 내지 제116조</u> ----- 4. -- <u>제117조 내지 제120조</u> -----

성남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80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6. .

발 의 자 : 김해숙 의원 등 8인

☐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2007. 5. 11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제명 “성남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”를 “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”로 개정
- 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로 개정
- 제5조 중 “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를 “「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”로 개정

☐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
성남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남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남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”를 “성남시의회 사무기구
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
제91조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를 “「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성남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<u>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</u> 제5조 (직원의 정원) -- <u>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</u> -----	<u>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 제5조(직원의 정원) --- 「<u>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</u>」 ---

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80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6. .

발 의 자 : 유근주 의원 등 8인

☐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2007. 5. 11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3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”로 개정

☐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
성남시조례 제 호

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3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-- <u>지방자치법 제32조</u> -----	제1조(목적) -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<u>제33조</u> -----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80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6. .

발 의 자 : 한성심 의원 등 8인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2007. 5. 11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, 동 조례 제26조(준용규정)중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를 명칭변경 개정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6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”로 개정
- 제5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로, “법 제108조 및 제111조”를 “법 제117조 및 제120조”로 개정
- 제5조제1항제3호 중 “법 제137조” 를 “법 제146조” 로 개정
- 제5조제1항제4호 중 “법 제95조제2항”을 “법 제104조제2항”으로 개정
- 제23조 중 “성남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「성남시의회 회의규칙」”으로 개정
- 제25조제7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20조”를 “법 제27조”로 개정
- 제26조(준용규정) 중 “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「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, “성남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「성남시의회 회의규칙」”으로 개정

□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로, “법 제108조 및 제111조”를 “법 제117조 및 제120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법 제137조”를 “법 제146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 중 “법 제95조제2항”을 “법 제10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 중 “성남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「성남시의회 회의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7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20조”를 “법 제27조”로 한다.

제26조(준용규정) 중 “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「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, “성남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「성남시의회 회의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--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6조 -----	제1조(목적) ---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1조 -----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-- 제104조 내지 제107조 ----- -- 제108조 및 제111조 ----- 3. ----- 제137조 ----- 4. -- 제95조 제2항 -----	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 제113조 내지 제116조 ----- -- 제117조 및 제120조 ----- 3. ----- 제146조 ----- 4. -- 제104조 제2항 -----
제23조(징계) --- 성남시의회의회의규칙---	제23조(징계) --- 「성남시의회 회의규칙」 ---
제25조(과태료) ①~⑥ (생략) ⑦ ---- 지방자치법 제20조 -----	제25조(과태료) ①~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법 제27조 -----
제26조(준용규정) --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와 성남시의회의회의규칙을 준용한다.	제26조(준용규정) -- 「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「성남시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성 남 시 의 회 의 원 윤 리 실 천 규 칙

일부개정 규칙안

의안 번호	180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6. 22.

발 의 자 : 김현경 의원 등 8인

☐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2007. 5. 11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제명 “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”을 “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”으로 개정
- 제8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”로 개정

☐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
성남시의회 규칙 제 호

성 남 시 의 회 의 원 윤 리 실 천 규 칙 일부개정 규칙안

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”을 “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</u> 제8조(겸직금지) --<u>지방자치법 제33조</u>--	<u>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</u> 제8조(겸직금지) --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35조 -

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의안 번호	180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6. 22

발 의 자 : 남용삼 의원 등 9인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2007. 5. 11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, 동 규칙 제1조(목적)중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를 명칭변경 개정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 조항도 개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제명 “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”을 “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”으로 개정
- 제1조 중 “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제5항”을 “「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의3제4항”으로 개정
- 제2조제1항 중 “조례 제9조제2항”을 “조례 제9조제3항”으로 개정
- 제3조제1항 중 “조례 제7조제6항”을 “조례 제7조의3제3항”으로 개정
- 제5조제3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7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”로 개정

□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
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”을 “성남시의회
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제5항”을 “「성남시
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
제7조의3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조례 제9조제2항”을 “조례 제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조례 제7조제6항”을 “조례 제7조의3제3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7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</u> 제1조(목적) ----- <u>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</u>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제5항 ----- 제2조(구성) ① ----- <u>제9조제2항</u> ----- 제3조(임기) ① ----- <u>제7조제6항</u> ----- 제5조(윤리심사요구와 회부) ① ~ ②(생략) ③ --- <u>지방자치법 제75조</u> -----	<u>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</u> 제1조(목적) ----- 「<u>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의3제4항 ----- 제2조(구성) ① ----- <u>제9조제3항</u> ----- 제3조(임기) ① ----- <u>제7조3제3항</u> ----- 제5조(윤리심사요구와 회부) ① ~ ②(현행과 같음) ③ 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83조 -----

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

의안 번호	180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6. 22

발 의 자 : 한성심 의원 등 8인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2007. 5. 11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제명 “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”을 “성남시의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개정
- 제1조 중 “성남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「성남시의회 회의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로 개정
- 제2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2조”로 개정
- 제3조제1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개정
- 제3조제3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개정
- 제4조제1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개정
- 제6조제2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개정
- 제7조제1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, “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”을 “「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개정

- 제7조제2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, “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”을 “「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개정
- 제9조 중 “성남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개정
- 제10조제2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개정
- 제11조제1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개정
- 제12조제2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개정

☐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
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

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”을 “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성남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「성남시의회 회의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2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, “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”을 “「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, “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”을 “「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성남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의회회의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</u> 제1조(목적) --- <u>성남시의회회의규칙</u> --- 제2조(용어의 정의) 1.--- <u>지방자치법</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 --- 제3조(본회의록) ① ---- <u>의회회의규칙</u> ----- ②(생략) ③ ---- <u>의회회의규칙</u> ----- 제4조(위원회 회의록) ① ---- <u>의회회의규칙</u> ----- 제6조(임시회의록) ①(생략) ② ---- <u>의회회의규칙</u> ----- 제7조(보존회의록) ① ---- <u>의회회의규칙</u> ----- <u>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</u> ② ---- <u>의회회의규칙</u> ----- <u>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</u> 제9조(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의 기재) ---- <u>성남시의회회의규칙</u> ----- 제10조(참고문서, 기타) ①(생략) ② ---- <u>의회회의규칙</u> ----- 제11조(자구의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---- <u>의회회의규칙</u> ----- 제12조(회의록원의 복사, 열람) ①(생략) ② ---- <u>의회회의규칙</u> -----	<u>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</u> 제1조(목적) -- 「<u>성남시의회 회의규칙</u>」 (이하 “<u>규칙</u>”이라 한다) ----- 제2조(용어의 정의) 1.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72조 ----- 제3조(본회의록) ① ---- <u>규칙</u> ----- 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 <u>규칙</u> ----- 제4조(위원회 회의록) ① ---- <u>규칙</u> ----- 제6조(임시회의록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 <u>규칙</u> ----- 제7조(보존회의록) ① ---- <u>규칙</u> ----- 「<u>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</u>」 ② ---- <u>규칙</u> ----- 「<u>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</u>」 제9조(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의 기재) ----- <u>규칙</u> ----- 제10조(참고문서, 기타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 <u>규칙</u> ----- 제11조(자구의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---- <u>규칙</u> ----- 제12조(회의록원의 복사, 열람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 <u>규칙</u> -----